

시외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2020. 1. 1

세종텔레콤(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시외전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서비스의 이용에는 전화서비스 기본약관 및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계약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서비스의 종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용어정의

1. 시외전화 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정하는 통화권 간에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와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2. 가입자 :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케이티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
3. 사전선택 : 가입자가 사업자식별번호를 누르지 않고 시외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외전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것

② 기본서비스

1. 시외자동통화서비스 : 기업이나 가계고객이 직접 다이얼하여 시외전화를 하거나 팩스(FAX)를 이용하는 서비스
2. 세종직통회선서비스(SEJONG-Direct) : 회사의 통신망 설비와 이용자가 지정하는 곳의 단말기를 케이티등의 공중전화망을 거치지 않고 전용회선(이하 “직접접속회선”이라 합니다)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3. 시외종합정보통신서비스(SEJONG-ISDN) : 디지털 통신망을 통합하여 음성, 데이터, 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
 - 기본접속서비스(BRI) : 1개의 회선으로 2개의 B채널(64 Kbps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합니다) 과 1개의 D16채널(16Kbps로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합니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일차군접속서비스(PRI) : 1개의 회선으로 30개의 B채널과 1개의 D64채널(64Kbps로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합니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③ 부가서비스

1. 제3자과금 서비스(Third Party Billing) : 미리 등록된 특정의 번호(자번호)에서 이용한 통화요금을 별도로 지정한 제3자(모번호)가 부담하는 서비스
2. 가상사설망서비스(VPN) : 고객이 정한 번호체계로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하는 서비스
3. 팩스전용서비스 (SEJONG e-fax) : 팩스 전용의 프리픽스를 이용, 기본적인 팩스통화 및 등보 등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팩스 서비스
4. 카드 서비스 : 선불, 후불, 신용카드, 제휴카드 등 각종 카드로 시외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④ 빌링구현 서비스

1. 한가족 수신자 부담서비스 : 여러 개의 발신번호를 그룹으로 사전 등록하여 등록된 번호로부터 자신에게 걸려오는 시외전화 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
2. 요금통합청구 서비스 : 고객이 미리 등록한 번호에서 이용한 통화요금을 특정전화번호로 일괄 청구하는 서비스
3. 정액권 선택서비스 : 선택한 정액권 요금으로 일정 통화 가능 요금까지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

제4조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선불카드 : 회사가 발행한 카드로서 고객이 사전에 구입하여 시외전화를 사용하고, 이용요금은 이용시 자동으로 카드에서 감액되는 카드
2. 세종후불카드 : 회사에서 발행한 카드로서 시외전화 이용 후 사전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요금이 청구되는 카드
3. 세종제휴카드 : 타 업종 또는 타사업자와 제휴하여 회사가 발행한 카드로서 세종카드 번호를 사용하여 시외전화를 이용한 후 사전에 지정한 전화번호로 요금이 청구되는 카드
4. 세종신용카드 : 회사와 제휴한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번호를 사용하여 시외전화를 이용한 후 사전에 지정한 카드번호 결제계좌로 요금이 청구되는 카드

②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단, 계약자가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 1년 단위로 발행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세종후불카드, 세종제휴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합니다.

④ 제3자과금 서비스의 경우 1개의 모번호에 대해 자번호는 10개 이내로 합니다.

⑤ 시외종합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접속서비스(BRI): 1개의 회선으로 2개의 B채널(64K bps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합니다.)과 1개의 D16채널(16K bps로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합니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 이차군접속서비스(PRI): 1개의 회선으로 30개의 B채널과 1개의 D64채널(64K bps로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합니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5조 (계약단위)

계약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가입계약은 1가입 계약당 1인으로 합니다.

제6조 (일반전화에 의한 이용계약)

케이티의 일반전화가입자 등 국내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가 회사의 시외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 회사와도 각각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이용신청 및 승낙)

- ① 이용 신청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신청이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 합니다.

제8조 (승낙의 유보)

- ①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하고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신청자가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요금 등의 체납상태인 경우
 3. 회사 카드의 위조, 변조 등 불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중 체납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8. 단말기 설치장소가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9.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10. 5회선 이상의 다량 회선을 신청 받는 경우
- ②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단,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승낙유보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9조 (이용번호의 부여 및 관리)

- ① 부가서비스 이용에 이용자별 번호가 필요한 경우, 승낙 순서에 따라 일정한 수의 번호를 제시하고 이용신청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 ② 회사는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에는 부여된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권의 양도승계)

- ①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1.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 ②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본 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본 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본 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의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4. 본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5.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11조 (번호의 변경)

- ① 이용자는 부득이하게 번호변경이 필요한 경우 번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 시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개월 동안 일 평균 1건 미만의 이용통화량이 발생한 번호에 대해서는 고객통지의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정지 등

제12조 (이용정지)

-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로 합니다)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에 관한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 요금을 최초 납기일의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회사가 설치 또는 대여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한 경우
 3. 단말기기를 정당한 설치장소 외에 설치한 경우
 4.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직원에 의한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약 사실을 숨긴 경우
 6.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정지 7일전까지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3조 (이용제한 및 차단)

-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회사는 이용제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 하거나 별도로 공시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해하거나 사전 윤리심의를 받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불완료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해당 번호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일시이용중단)

- ① 이용자는 부가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중단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일시이용중단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까지 이용중인 번호의 유지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휴지 처리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제15조 (카드서비스의 이용정지)

회사가 발행한 카드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카드통화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토록 합니다.

1. 비밀번호를 연속 3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2. 통화권이 상이한 지역에서 동일카드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인 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1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체결한 해당 계약 기준에 의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승낙에 따른 가입비를 납일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2. 서비스 이용 시 정지된 후 1월 이내에 이용자가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7. 기타 전화서비스 기본약관에서 정한 경우
- ③ 본조 제2항 제6호의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8. SMS 발송 또는 TM 실시
 9. 내용증명 발송
- ④ 본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요 금

제17조 (과금거리의 산정)

- ① 요금산정을 위한 거리(이하 “과금거리”라 합니다)는 과금기점 상호간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 ② 과금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로 하며 1킬로미터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과금기점 및 관할구역, 과금거리는 케이티가 정하여 공시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요금의 산정)

-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1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요율 및 적용방법(감면 및 할인포함)은 별표1과 같습니다.
- ③ 이 약관에 의하여 청구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의 계산결과가 1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 ④ 회사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가입자 모집 등 회사의 영업행위를 대행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요금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 세종선불카드의 요금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 발행된 선불카드의 요금도 변경된 요율로 적용합니다.

제19조 (최저이용료의 계산)

- ① 최저이용료가 적용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월간 실사용요금이 최저 이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합니다.
- ② 요금 월의 중도에 서비스의 개시, 해지, 이용정지, 이용제한, 일시이용중단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월 요금은 실사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20조 (감면 및 할인)

- 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111, 112, 113 등)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보도용 전화”라 합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용 전화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기관의 전화로서 케이티 등으로부터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금을 감면합니다. 다만, 케이티 등이 보도용전화로 지정하고 있는 전화는 회사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신문사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사 및 주간신문사로서 본사, 지사, 총국 및 지국이 없는 군 단위 1개 보급소
 2. 통신사 :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통신사 및 동 지사
 3. 방송국 :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방송국(특수방송 포함)으로서 본사, 동 지사, 동 중계소 및 동 분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금을 감면합니다. 다만, 케이티 등이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전화(팩스)는 회사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중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가구
 - 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수급자
 -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다.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라.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④ 이용자는 지정사유가 해소, 변경되는 즉시 회사에게 알려야 하며, 회사는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

제21조 (요금의 반환 및 체납요금의 징수)

- ① 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거나, 사전납부 금액의 정산 또는 요금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반환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즉시 반환합니다. 다만, 요금을 반환 받을 사람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요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요금을 반환 받는 사람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 ③ 회사는 요금납입자가 요금을 체납하여 최초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천재지변 또는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선불카드 계약자가 선불카드의 사용잔액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유효기간 내 카드
 - 가. 권면액 1만원 이하 : 표시된 금액 중 80%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환불
 - 나. 권면액 1만원 초과 : 표시된 금액 중 60%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환불
 - 다. 사용잔액 : 판매가격×미사용잔액÷카드표면에 표시된 사용가능금액
 2. 유효기간경과 1회 이상 사용카드
 - 가. 환불기준 : 사용잔액의 90% 환불
 - 나. 사용잔액 : 판매가격×미사용잔액÷카드표면에 표시된 사용가능금액
 3. 유효기간경과 미사용카드 : 판매가격의 90%환불

제22조 (요금사전납부 할인)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사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구할 금액에서 2%를 익월 청구할 금액에서 할인하여 청구합니다.

제23조 (가산금의 부과)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납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미납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제24조 (손해배상)

-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때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18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자가 납부한 최근 3월분 요금의 일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 ③ 제2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사전선택

제25조 (신규등록)

- ① 신규로 전화를 신청하려는 자가 시외전화사업자를 회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화국 등 취급국에 신청합니다.
- ② 제1항의 신청 시 해당 전화국 등 취급국이 지정한 신청서에 표시된 시외전화사업자를 회사로 선택 지정합니다.

제26조 (변경등록)

- ① 가입자는 최근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사로 시외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이용권의 양도·승계시는 9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시외전화변경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 : 회사가 정한 신청서식 사용
 2. 신청인의 자격 및 요건 : 가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 또는 인감 날인
 3. 신청서의 제출 :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전화·팩시밀리로 제출
- ② 명의의 전화를 사실상 사용하는 자가 변경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회사가 전화명의 변경에 관한 신청접수를 대행하여 해당 변경등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로의 시외전화사업자 변경등록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변경희망일에 이루어지고, 변경등록센터 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단, 변경희망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변경등록센터에 변경등록을 요청한 날로부터 3일째에 변경 등록됩니다.
- ④ 가입자는 변경등록시 변경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⑤ 가입자는 제5항의 변경등록수수료를 케이티 정기요금청구서로 납부하거나 또는 회사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⑥ 제5항의 변경등록수수료는 가입자와의 별도계약을 통해 회사에서 대납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계약내용 미이행시는 대납금액을 가입자에게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에게 대납에 따른 계약 내용 이행의무를 통지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납금액을 재청구하지 않습니다.

부 칙

제1조 (사전가입자 적용규정)

이 약관의 신고전에 회사의 시외전화서비스에 사전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이 약관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전국대표번호 번호이동가입자 적용규정)

이 약관 시행전 제7장에 따른 전국대표번호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하여는 본 약관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8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은 부가세 포함 금액 입니다.

1. 표준 통화료

가. 표준 통화료

거리단계		과금거리 30Km까지 및 인접통화 구간(I)	과금거리 31Km이상 (II)
시간대	표준시	42.9원	15.180원
	할인시	42.9원	13.662원
	심야할인시	42.9원	10.626원
과금단위	표준시	180초	10초
	할인시	200초	10초
	심야할인시	258초	10초

※ 1통화당 요금의 1원 미만은 절사 함

○ 시간대 구분

시간	00	06	08	24
월~금	심야 할인	할인	표준	
토요일				
일/공휴일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 시내전화 번호사용 인터넷전화로의 통화료 : '가. 표준통화료' 요금 적용

2. 세종직통회선서비스(SEJONG-Direct)

○ 통화료 : DDD와 동일

○ 최저이용료 : 33,000원

○ 최저이용료 적용방법

- 월 통화료(동일회선으로 국제통화 이용시 해당 국제통화료 포함)가 최저이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최저이용료 적용
- 최저이용료의 계산에 있어서 요금월의 중도에 최저이용료가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전의 이용일수에 변경전의 최저이용료의 1/30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변경된 날로부터 그 요금월의 말일까지의 이용일수에 변경된 최저이용료의 1/30 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함

3. 가상사설망서비스(VPN)

○ 통화료

구분	시외	이동망 접속
통화료	세종 서비스별 요금과 동일	

○ 부가서비스 이용료

구분	내용
이용료	55원/건

4. 시외종합정보통신서비스(SEJONG-ISDN)

○ 통화료 : DDD와 동일

○ 최저이용료

- BRI : 회선당 33,000원/월
- PRI : 회선당 495,000원/월

○ 최저이용료 적용방법

- 월 통화료(동일회선으로 국제통화 이용시 해당 국제통화료 포함)가 최저이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최저이용료 적용
- 최저이용료의 계산에 있어서 요금월의 중도에 최저이용료가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전의 이용일수에 변경전의 최저이용료의 1/30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변경된 날로부터 그 요금월의 말일까지의 이용일수에 변경된 최저이용료의 1/30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함

5. 이동망 착신호 통화료

- 이동전화(Cellular) 착신호 통화료 : 케이티 일반전화 이용약관에서 정한 기타 통화료 중 이동전화(Cellular)와의 통화료 적용
- 개인휴대전화(PCS) 착신호 통화료 : 케이티 일반전화 이용약관에서 정한 기타 통화료 중 개인휴대전화(PCS)와의 통화료 적용
- 무선호출호 통화료 : 케이티 일반전화이용약관에서 정한 기타 통화료 중 무선호출서비스 이용 통화료 적용
- 주파수공용통신(TRS) 착신호 통화료 : 20.9원/10초
- LGU+ 030 착신호 통화료 : 125.4원/분 (2001.12.1일부터 시행)

6. 이동망 접속 부가서비스 통화료

서비스명	유선전화 ↔ 이동망
3자과금 후불/신용카드 (요금/과금단위)	173.8원/1분
선불카드 (요금/과금단위)	220원/1분

7. 세종 E-팩스 서비스

○ 통화료

거리단계		과금거리 30Km까지 및 인접통화 구간(I)	과금거리 100Km까지 (II)	과금거리 101Km이상(III)
시간대	표준시	44.77원	33.55원	43.12원
	할인시	44.77원	25.19원	32.34원
	심야할인시	44.77원	16.83원	21.56원
과금 단위	표준시	60초	30초	30초
	할인시	86초	30초	30초
	심야할인시	86초	30초	30초

○ 세종 E-팩스 Biz 통화료

구분	요금	비고
내용	세종텔레콤 시외전화 표준통화료 요금 적용	기본료 : 월 5,500원/회선

8. 선불카드

○ 통화료

거리단계	과금거리 30Km까지 및 인접통화 구간(I)	과금거리 31km이상 (II)
이용요금	33원/1분	67원/1분

9. 후불카드

○ 통화료

발신구분 \ 착신구분	과금거리 30km까지	과금거리 30km이상	무선 착신	인터넷전화 (VoIP)
유선전화	0.11원		0.66원	0.33원
과금단위	1초			
공중전화	25.3원	92.4원	173.8원	92.4원
과금단위	1분	1분	1분	1분

※ 통화당 요금의 1원 미만은 절사

○ 지정번호 통화료 할인

- 최대 3회선까지 지정번호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정번호는 이동전화번호(010, 011, 016, 017, 018, 019)에 한함.

- 지정번호 수 별 할인율

지정번호 수	1회선	2회선	3회선	비고
할인율	30%	20%	15%	과금단위 : 1분

○ 부가서비스 이용료

구분	유선망발신호	무선망발신호
이용료	55원/30초	55원/15초

10. 케이티 114 번호안내 서비스료

○ 케이티 번호안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표” 및 “요금감면표” 적용

[별표2] 요금 감면 및 할인

1. 요금 감면

감 면 대 상		감면율
①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구조기관이 그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전화 ② 수해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하는 전화 ③ 전화 및 전용설비에 대한 장애신고 또는 업무상담 등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④ 제36조 제1항 제1호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00%
⑤ 보도용 전화		30%
⑥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 약관 제21조 제3항 제1호~제3호, 제5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	월 통화요금 33,000원 한도 내에서 50%감면
	- 약관 제36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통화요금 75도수 면제
* 가입무료통화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청, 가입 이용자에게 3개월기간내에 총 5,500원까지 가입무료통화를 제공할 수 있음.		

2. 요금자동납부할인 등

자동납부(2013.5.1부터 폐지)	청구 금액의 1% 할인
사전납부	청구 금액의 2% 할인

3. 선택요금제 할인서비스

구 분	월정액	할인율	적용통화	할인조건 및 기준	계약단위
선택지역 할인	1,100원	20%	시외 2대역	사전지정된 1개 지역번호권 (자기번호권 제외)으로의 이용통화	회선단위
지정시간 할인	1,100원	20%		할인,심야할인시 통화 (통화발생시점 기준)	
종량할인-1	1,100원	10%	시외 1,2대역 통화	시외전화 월10,000원이상 40,000원미만 이용자	
종량할인-2	2,420원	13%		시외전화 월40,000원이상 80,000원미만 이용자	
종량할인-3	4,180원	15%		시외전화 월80,000만원이상 150,000원미만 이용자	

- ※ 가입신청기준 : 매월 1일 기준
- ※ 선택요금제 상호간 중복가입 불가
- ※ 종량할인-1의 경우에 월이용금액이 할인조건 미만시에는 할인이 없으며 할인조건 초과사용분은 표준요금체계 적용
- ※ 종량할인-2, 3의 경우에 월이용금액이 할인조건 미만시에는 종량할인 하위상품의 할인율을 적용하고(단, 이용금액이 하위상품 할인적용 범위내일 경우) 할인조건 초과사용분은

표준요금체계 적용

4. 정액권 선택 할인 [신규가입 중단 상품]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정액권	통 화 가 능 요 금			
	12개월 이내	13개월 이후	25개월 이후	37개월 이후
1) 1만원권	11,704	11,957	12,232	12,507
2) 3만원권	36,267	37,081	37,939	38,830
3) 5만원권	61,798	63,228	64,713	66,275
4) 10만원권	126,445	129,415	132,539	135,806
5) 20만원권	261,910	268,301	275,000	282,062
6) 30만원권	407,418	417,725	428,582	440,000
7) 50만원권	687,500	705,133	723,690	743,248
8) 100만원권	1,375,000	1,410,266	1,447,369	1,486,496

※ 이동망 착신호, 선불카드, 신용카드, 기타 부가서비스와 가상사설망통화 서비스의 가입계약료는 정액권 선택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가입기간 : 2001년 11월 30일 까지(기가입자는 만료시까지 유지)

5. 맞춤형 정액요금제

- 내용 : 매월 월평균통화료 + 추가월정액 지불시 시외전화(DDD)를 무제한 사용하는 상품
- 가입기간 : 연간 3개월이내에서 특판기간 설정 시행
- 가입대상자 : 특판 시행일전 6월이상 시외전화 이용 주택용 가입자. 복수(2회선 이상) 가입자는 가입 및 해지시 일괄처리
- 가입기간 : 가입후 1년
- 직권해지 : 실질적 용도변경 사용 및 공동이용 등 정액제를 악용할 경우
- 월평균 통화료 : 원칙적으로 특판 시행일전 1년 청구분 월평균
- 추가월정액

월평균 통화료	11,000원 미만	11,000원 ~ 22,000원	22,000원 ~ 33,000원	33,000원 ~ 44,000원	44,000원 ~ 55,000원	55,000원 ~ 110,000 원미만	110,000 원 이상
추가 월정액	1,100원	1,650원	2,200원	2,750원	3,300원	3,850원	5,500원

[별표3] 신규 청약 구비 서류

1. 개인

구분		구비서류	
		본인	대리인
개인		본인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활용/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외국인	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영주권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주둔명령서, 주한미군 ID 카드 중 1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 신분증, 주둔명령서, 주한미군 ID카드 중1,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1,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	법정대리인내방시 :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신분증, 가입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대리인 방문시 :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대리인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1.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구비서류	
	본인	대리인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상장/비상장/공공법인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